

#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4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0. 2. 3

제 출 자 : 우강호의원외 6인

## 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 
규정에 의하여 중요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 
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나. 심사기간은 2000. 2. 10. 1일간으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  
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  
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

# 심 사 제 획

## 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##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

-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계점조례안
-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계점조례안
-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계점조례안
-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
- 평창군규모이하계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계점조례안
-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계점조례안
-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계점조례안
-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
- 평창군세감면조례중계점조례안
-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계점조례안
-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계점조례안
- 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계점조례안

## 3. 활동기간

- 2000년 2월 10일 1일간으로 한다.

## 4.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

- 이경전의원, 강석주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김완규의원,  
유강호의원, 김전석의원